

龜尾市洞繁榮會條例中改正條例(案)

1. 條例의 現況

(1) 동번영회 조례 제정 목적

동행정에 동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을 참여케 하여 지역안정과 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조례의 주요 내용

제 정 : 1978. 2. 15 조례 제 101호

개 정 : 4회 (최종 1989. 8. 12 조례 789 호)

구 성 [위원장 (동장) 사업위원 : 감사위원 각 2인
당연직 위원 : 파출소장, 우체국장, 학교장, 예비군 중대장

임 기 :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

2. 改正條例(案) 主要 內容

(1) 제 3 조 (구성) 중 ④ 항 신설

④ 항, 고문은 약간 명을 두되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제 4 조 (위원등의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 →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변경

3. 檢討 意見

동번영회 위원에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개정 함으로써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번영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동장)의 자의를 방지하여 보다 지역안정과 화합 발전에 기여하게 되리라 기대됨.

龜尾市 婦女福社會館設置 및 使用 條例 中 改正條例 (案)

1. 改正條例案의 推進經緯

(1) 내부부 지기 01210 - 9023 ('91.9.18) 의 관련호로 '91.9.27 에 도지사로 부터 구미시 부녀복지회관 기능보강 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2 조 (직급별 정원)
-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코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도지사를 거쳐서)

(2) 조례 개정 내용

- 관장 직급 상향 조정

· 현 행 : 5 급 상당 지방별정직

· 개 정 : 지방서기관 또는 4 급 상당 지방별정직

- 조례안의 의회 상정

· 상 정 일 : '91. 10. 2

· 상정결과

부 결 : '91. 10. 16 제7차 임시회의시 부결

(찬성 8 명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

(3) 제안 사유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부응하고,

-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기능을 보강

龜尾市 地方公企業法 適用對象 事業의 基準에 關한 條例 (案)

1. 提案事由

구미시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실시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규모와 기준을 정함.

2. 法的根據

○ 지방공기업법 제 2 조 ② 항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2 조 ② 항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경영하는 다음 사업으로서 조례를 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시장 사업

2) 도축장 사업

3)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4) 봉운 사업

5) 중기관리 사업

6) 관광 사업

7) 계량기 검정사업

8) 체육장 사업

9) 문화예술 사업

10) 공원 사업

11)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그 경비를 주로 사업 경영 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

3. 主 要 内 容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사 업 명	기 준	
	직 원 수	사 업 규 모
통합공과금사업	1 0 명 이상	4 종 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되고 가구수 10 천 가구 이상의 지역